

2020년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10.(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주요내용: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함.

- 회의결과: 김경숙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47건(안건번호 제2020-41225호~4245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41225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41226호는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자가 독일어 버전의 미국 애니메이션을 이메일로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41227호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41228호~4126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

트웨어 복제물과 제품키, 크래킹 프로그램 등을 함께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19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14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850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0-34419호~36268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14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1,389개의 URL 정보는 심의에서 각 웹페이지로 접속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에 관한 461개의 URL 정보는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성원영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성원영 전문위원: 오늘 의결안건은 세 개임. 제1호 안건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제2호 안건은 시정권고 심의, 제3호 안건은 구글 검
색결과 제한 심의임.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성원영 전문위원: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
견을 구함. 박성호 위원은 현재 전체위원회의 위원장이므로 박성호
위원을 제외한 심의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김경숙 위원을 제2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함.
- B 위원: 동의함.
- C 위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출석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김경숙 위원을 제2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함.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경숙 위원을 선출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유니버설픽쳐스’, ‘소니픽쳐스’, ‘월트디즈니컴퍼니’, ‘20세기폭스’, ‘어도비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구글’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C 위원, B 위원, A 위원: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 등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24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 번호는 제2020-41225호~42459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

고서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1255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신고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 드라마 ‘○○○○’ 5회, 6회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3개를 제공하고 있고, 게시물 내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과거 심의위원회는 해당 티스토리 블로그 ‘◎◎◎◎’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심의한 바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클릭하면 미국에 서버가 있는 웹페이지 ‘◇◇◇◇◇◇◇◇◇◇◇◇◇◇◇◇’와 네덜란드에 서버가 있는 웹페이지 ‘□□□□□□□□□□□□□□’으로 연결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어 번역 자막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또한 여러 건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음. 게시자는 광고 게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4125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특별한 이견 없음. 가결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이견 없으므로 가결함.

- 정현순 사무처장: 그렇다면 댓글이 있을 수 없는 구조임.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위원회는 직접증거 없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바 있음. 예컨대 비밀댓글의 증거력 인정에 관한 문제에서 비밀댓글 개수, 게시판 제목, 게시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문의, 구매후기 등의 댓글이 달려있지 않음.
- C 위원: 판매량을 파악할 수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파악이 불가함. 다만 국내에서 독일어 공부 목적으로 본 건 영화파일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있을 수 있음. 그런데 본 건 영화파일과 동일한 합법 저작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음. 국내 접속 시 '○○○○'에서는 우리말 버전과 영어 버전만 제공하고 있음. 이에 독일어 더빙 파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B 위원: 본 건 영화파일에 대한 수요가 많아 보이지 않음. 최근 독일어 공부 목적으로 영화를 이용하려는 수요는 둔화하는 추세임.
- 성원영 전문위원: 독일어 더빙판이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고 있지 않더라도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이트에서 본 건 영화의 합법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나 잠재적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하지만 본 건 영화파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낮다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야 마땅함.

- B 위원: 본 건 게시자가 올린 다른 게시물도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본 건 게시자의 게시 이력을 제시하면서)다른 게시물은 모두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글임. 사무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 사이트에서 불법콘텐츠를 거래한 이력은 본 건이 유일함.

- B 위원: 게시자는 독일어 학습자를 위한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독일어 더빙 버전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는데 게시자는 어떤 경로로 더빙 버전 파일을 구할 수 있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독일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독일어로 더빙됨. 독어의 언어적 특성상 독일어 자막을 읽거나 삽입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자막 처리보다는 더빙 방식이 선호되는 것임. 게시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독일어 더빙 버전을 불법 복제하여 전송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영화 포스터 역시 영화 제목이 독일어로 표시되어 있음.

- B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보고한 의견에 동의하며 부결 처리함이 타당함.

- C 위원: 특별한 이견 없음.

- A 위원: 해당 안건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최한 제2020-93회 전체위원회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안에서 7인의 위원이 찬성, 3인의 위원이 반대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의결하고 기존 입장을 변경한 바 있음.

- B 위원: 웹사이트 운영자가 링크 설정 게시물을 올린 사안에 대해 새로운 심의 기준이 적용된 첫 안건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 B 위원: 본 건은 시정권고 선례가 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C위원: 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함. 시정권고를 가결함.
- A 위원: 같은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122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1228호~41262호는 보호원이 모니터링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금번 심의안건 중 웹하드 사이트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은 총 35개 안건, 49개 게시물임. 각 안건의 불법복제물, 게시자, 버전, 저작권사, 무료 체험용 제공여부, 그리고 자동인증, 무

설치, 크래킹 프로그램 등에 관한 특이사항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41228호~4126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 관련 건에 대한 기존 심의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기존 심의위원회는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라이선스 계약 위반인지 논의를 해왔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인지는 별도로 하고 크래킹 프로그램과 라이선스 키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C 위원: 금전 거래로 사고 받는 행위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무리가 없음.

- B 위원: 동의함.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함께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권고를 가결함.

- A 위원: 해당 안건은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1228호~4126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1263호~42459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대부분 영화 불법복제물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B 위원,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41263호~4245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1263호~42459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122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제2020-41225호, 제2020-41227호~4245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

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3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3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4쪽부터 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4419호~36268호 중 현재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4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1,389개 URL 정보(안전번호 제2020-34880호~36268호)는 부결하고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와 관련된 461개 URL 정보(안전번호 제2020-34419호~34879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0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17.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